

영등포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9.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

이사

이사를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9조제2항 중 비상임 이사 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당연 직 이사를 2인 이내로 제한
- 안 제25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단서 규정을 삭제

※ 24 1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현황

- 이사회 구성 : 7명
 - 의장 : 이사장
 - 이사 : 6명
 - 상임이사(본부장) : 1명
 - 당연직 이사 (비상임 이사) : 3명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 위촉직 이사 (비상임 이사) : 2명
 - 선정 :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
 - 임기 : 3년, 연임가능
 - 업무 :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 타구현황

- 당연직 이사 1명 : 구로구
- 당연직 이사 2명 :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종로구, 중랑구, 중구, 강남구
- 당연직 이사 3명 : 동대문, 양천구, 강동구,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범대상(2개소 40면)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	주차장 이용자 현황(%)			수입액 (3년월평균 단위:천원)	
			점포주	시장 고객	주 변 거주자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중마루 공원 앞	32	30	60	10	8,979	공단위탁일자 07.7.1~ 2010.6.30
영등포 중앙시장	시장 내	8	10	90	-	1,460	

■ 구 자문번호사(5명)에게 법률 검토자문

- 자문내용 : 현 구조례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의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가능 여부
- 자문종합 : 특별법에 의해 조례의 제한 규정 불구 위탁가능 (그러나 위탁의 취지에 맞게 구 관련조례의 개정을 권유)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비상임 이사 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새롭게 통보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이사)의 조문 중 제2항

비상임 이사 중 영등포구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공단의 당연직 이사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의 조문 중 제2항의 단서 규정 삭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가능하지만 현행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5조제2항에는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특별법이 조례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단서 조항과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던 것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9. 9.

보고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08년 12월)

II.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 비상임 이사
 - 비상임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
 - 비상임 이사 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영등포구의 공단감독 부서의 장·예산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